가족이 가지는 권리

컬럼비아 특별구
장애를 가진 개인 교육법(IDEA)
파트 C 가족을 위한 절차적 보호조치

DC 조기 개입 프로그램(DC EIP)
조기교육분과

주 교육감 사무실

(OSSE)
DC 조기 개입 프로그램(DC EIP)
조기교육분과

가족의 권리

- 가족은 평가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 자격이 되는 가족은 최초 접촉 후 45일 이내에 조율을 거친 계획(COORDINATED PLAN)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 자격이 되는 가족은 서비스 코디네이터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 가족은 사생활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 가족은 동의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 가족은 본인의 기록을 검토할 권리가 있습니다
- 가족은 자녀와 가족에 관한 기록을 수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 가족은 서면 사전 통지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 가족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가족은 부동의에 대한 권리도 있습니다

주 교육감 사무실

(OSSE)

가족이 가지는 권리

장애가 있는 개인 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파트 C는 서비스와 지원이 적절하고 공정하며 반응을 보이는 방식으로 제공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가족을 위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적 보호조치의 전문은 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 표제 34 파트 303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여기에서 이러한 보호조치를 설명해 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본인의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아래와 같이 문의하십시오.

- 담당 서비스 코디네이터
- 귀 자녀에게 조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또는
- DC EIP 직원(전화: (202) 727-3665 이메일: osse.dceip@dc.gov)

가족은 평가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조기 개입을 받을 자격 여부는 보통 발달과 관련된 우려 사항이 있어서 DC EIP에 의뢰된 자녀(3세 미만)에 대한 평가 후 결정됩니다. (34 C.F.R. § 303.321(a)(1)) 이러한 평가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다학제팀에 의해 실시되어야 하고, 이들은 평가 기구를 실행하고 귀 자녀의 이력, 발달 상태, 현재의 강점과 도전 사항을 비롯해 의료, 교육 및 기타 기록을 조사/검토합니다. (34 C.F.R. § 303.321(b)) 자격성을 수립할 수 있는 의료 또는 기타 문서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평가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4 C.F.R. § 303.321(a)(3)(i)) 귀 자녀가 조기 개입 서비스에 대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이 자녀는 조기 개입 서비스를 위한 의뢰를 받고 개인화 가족 서비스 계획(Individualized Family Service Plan, IFSP)의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34 C.F.R. § 303.342(a)) 귀 자녀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면, 귀하에게 서면으로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게 되며 귀하는 부동의 및 조정, 심리 또는 주 민원 절차를 통한 그러한 분쟁의 해결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34 C.F.R. § 303.322)

자격이 되는 가족은 최초 접촉 후 45일 이내에 조율을 거친 계획(COORDINATED PLAN)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각 자녀와 가족은 회의를 통해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면 계획, 즉 개인화 가족 서비스 계획(IFSP)을 개발하게 됩니다. (34 C.F.R. § 303.310(a)) 여러 가지 중에서도 IFSP에는 귀 자녀에 대한 가족의 자원, 우선사항 및 우려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며, 이는 귀하가 그러한 정보를 포함하는 데 동의할 경우에 한합니다. (34 C.F.R. § 303.344(b)) 반드시 6개월에 1회 IFSP 검토를 실시해야 합니다. (34 C.F.R. § 303.341(b)) 그러나 가족은 또한 진척도를 검토하거나 IFSP에 대한 가능한 변경을 논하기 위해 언제든 IFSP 팀과의 회의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연 1회 업데이트된 평가를 실시합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도 IFSP에는 또 해당 아동의 현재 발달 수준, 귀 자녀에 대해 타겟팅된 측정 가능한 결과 목표, 진척도 측정 방법, 서비스를 제공할 시간과 장소, 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불 방법이 포함됩니다. (34 C.F.R. § 303.344) 그 외에도 IFSP에는 귀 자녀의 필요에 부합하는 프리스쿨 또는 조기 아동 프로그램으로의 이행을 위한 계획도 포함됩니다. (34 C.F.R. §§ 303.344(h) and

303.209) 이행 계획의 논의는 검토 및 연례 IFSP 회의 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귀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이행 요구사항을 완료해야 합니다. (34 C.F.R. § 303.209(f))

부모가 동의서를 제공한 후 가능한 한 빨리 해당 아동에게 IFSP에 기재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부모가 IFSP에 서명한 후 30일 이내가 됩니다. (34 C.F.R. § 303.342(e))

자격이 되는 가족은 서비스 코디네이터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귀 자녀의 IFSP에는 귀 자녀와 가족이 IFSP에 포함된 조기 개입 서비스를 받는 데 도움을 줄 서비스 코디네이터의 이름이 포함될 것입니다. (34 C.F.R. § 303.344(g)) 예를 들어, 귀 가족의 서비스 코디네이터는 귀 자녀가 받는 서비스를 추적 관리하고, 귀 자녀가 IFSP에 명시된 서비스를 받도록 포장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서비스 제공자와 기타 관련 당사자와 함께 계획을 조율할 것입니다. 담당 서비스 코디네이터는 귀하가 본인의 권리와 DC EIP에 규정된 절차적 보호조치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의문점을 해결해 줄 자원이기도 합니다.

가족은 사생활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귀 자녀와 가족에 대해 개인적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한 정보가 포함된 기록은 해당 아동의 부모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장애를 가진 개인 교육법(IDEA) 또는 가족 교육권 및 사생활법(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FERPA)에 의거해 허용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 없이도 그러한 정보의 공개가 가능합니다. IDEA 파트 C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목적을 위해 이 정보를 수집, 유지관리 또는 활용하는 참여 기관의 승인을 받은 대리인,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해서도 부모의 동의 없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34 C.F.R. § 303.414)

가족은 동의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의 그러한 동의 또는 허가는 반드시 선별검사, 평가 또는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귀하의 그러한 동의는 반드시 조기 개입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34 C.F.R. § 303.420(a)) 귀하는 특정 서비스, 평가, 사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기로 선택하거나, 다른 조기 개입 서비스에 대한 영향 없이 서비스, 평가,

또는 사정을 수락하는 것에 대해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34 C.F.R. § 303.420(d)) 귀하에게 동의를 요청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공개되는 모든 기록(있는 경우)에 대해 귀하에게 알려야 하며, 귀하는 그러한 공개를 거부할 선택권이 있습니다. (34 C.F.R. § 303.7) 귀 자녀의 기록 또는 정보의 공개에 대한 거부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족은 본인의 기록을 검토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평가 및 사정, 자격 여부 결정 사항, IFSP의 개발 및 시행, 귀 자녀와 관련된 개인적인 불만 사항 및 강력한 시작 프로그램(Strong Start Program)에 의해 수집, 유지관리 또는 사용되는 귀 자녀 및 가족에 대한 일체의 기타 조기 개입 기록을 포함해, 귀 자녀와 관련된 모든 조기 개입 기록을 점검 및 검토할 수 있습니다. (34 C.F.R. §303.401(b)(2)) 귀하는 또 모든 기록의 사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DC EIP와 귀 자녀의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불필요한 지연 없이, 그리고 귀 자녀의 IFSP에 관한 회의 또는 파트 C와 관련하여 귀 자녀에 대한 심리 이전에,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그러한 요청이 있은 후 10일을 넘기지 않고 귀하의 요청을 지켜야 합니다. (34 C.F.R. § 303.405) DC EIP는 또 부모나 승인을 받은 대리인, 또는 DC EIP의 직원을 제외하고 귀 자녀의 파일을 열람하는 모든 자의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에는 그러한 당사자, 접근이 이루어진 날짜 및 해당인이 해당 기록을 사용하도록 승인을 받은 목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4 C.F.R. § 303.406) DC EIP 또는 해당

서비스 제공자는 사본에 대해 일정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요금은 귀하가 그러한 기록을 점검 및 검토할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DC EIP는 반드시 해당 아동의 조기 개입 기록의 최초 사본을 무상으로 부모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34 C.F.R. § 303.400(c). 또한, 부모는 각 IFSP 후 가능한 한 빨리 각 평가, 사정 및 IFSP 사본을 무료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4 C.F.R. § 303.409) DC EIP는 귀 자녀의 기록에서 정보를 찾아보거나

검색하는 것에 대해 요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34 C.F.R. § 303.409)

가족은 자녀와 가족에 관한 기록을 수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 자녀의 조기 개입 기록의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또는 귀 자녀 또는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할 경우, 귀하는 DC EIP에 해당 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요청 접수 시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DC EIP가 해당 정보를 수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귀하의 요청에 따른 정보의 수정을 거부할 경우, DC EIP는 반드시 귀하에게 거부 사실을 알리고 그러한 부동의를 해결하기 위해 귀하가 심리를 요청 및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34 C.F.R. § 303.410)

가족은 서면 사전 통지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DC EIP 또는 서비스 제공자는 귀 자녀의 식별, 평가 또는 배치, 또는 귀 자녀 또는 가족에 대한 조기 개입 서비스의 제공을 개시 또는 변경하도록 제안하거나 이를 거부하기에 앞서 반드시

귀하에게 사전 서면 통지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반드시 제안하는 결정/조치의 상세한 내용과 그러한 결정/조치에 대한 사유가 나와 있어야 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또 반드시 중재를 요청하고 주 민원을 제기하는 것과 민원 관련 적법 절차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귀하의 권리 및 민원 절차에 대해 알리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이 통지서는 반드시 일반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작성되고 귀하의 1차 언어 또는 귀하가 사용하는 기타 의사소통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34 C.F.R. § 303.421)

가족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DC EIP는 다른 많은 사항이 있지만 인종, 문화, 종교 또는 장애를 근거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귀하는 통지서를 포함해 조기 개입 정보를 귀하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통지서는 일반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1차 언어가 영어가 아닌 경우, 귀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명확히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의 1차 언어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수화나 점자 같이 다른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귀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귀하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사전 서면 통지서를 읽은 후 이를 귀하에게 설명하게 할 권리가 있습니다. (34 C.F.R. § 303.421(2))

가족은 부동의에 대한 권리도 있습니다

귀하는 DC EIP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귀 자녀의 식별, 평가 또는 배치, 또는 귀 자녀 또는 가족에 대한 조기 개입 서비스의 제공을 개시 또는 변경하기로 제안하거나, 이를 맡거나 또는 거부한 조치에 대한 사전 서면 통지를 받고 부동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34 C.F.R. § 303.421) 귀하가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법은 다음의 방식 중 하나를 통한 그러한 부동의의 시의적절한 해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 교육감 사무실(OSSE)에 정식 주 민원 제기
- 중재 요청
- 공정한 적법절차로서의 심리 요청

(34 C.F.R. § 303.430) 또한, 귀하의 우려 또는 부동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담당 제공자 및/또는 DC EIP 직원과 대화할 것을 항상 권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DC EIP 또는 담당 서비스 제공자도 위에 명시된 동일한 방식을 통해 귀하와의 부동의에 대한 시의적절한 해결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중재는 모든 당사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며 자격을 갖춘 공정한 중재관이 실시합니다. (34 C.F.R. § 303.431(b)) 조기 개입 서비스와 관련된 어떠한 문제도 중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법절차로서의 심리는 조기 개입에 대해 지식을 갖춘 공정한 심리 담당관이 실시합니다. (34 C.F.R. § 303.443(c)) 적법절차로서의 심리에 관여하는 부모는 변호사 및/또는 조기 개입 서비스에 대해 지식을 갖춘 기타 개인를 동반하고, 증거를 제시하고 증인을 대면, 반대심문 및 참석을 강제하고, 심리로부터 최소 5일 전까지 해당 부모에게 공개되지 않은 증거를 심리 시 제시하는 것을 막고, 비용 부담 없이 해당 심리의 녹취록을 입수하고, 또 비용 부담 없이 해당 심리 담당관의 결론 및 결정 사항의 서면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4 C.F.R. § 303.444) 귀하, DC EIP 또는 담당 서비스 제공자가 적법절차로서의 심리를 요청할 경우, 귀하는 이 지역에서 이용 가능하고 귀하에게 도움을 줄 무료 또는 저렴한 법률 및 기타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4 C.F.R. § 303.440(b)) 귀하는 또 귀하가 심리를 요청하는 것과 관계없이 단지 요청함으로써 이러한 정보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 DC EIP 또는 담당 서비스 제공자가 주 또는 연방의 관할 법원에 그러한 결정 사항에 항소하지 않는 한, 심리에서 이루어진 일체의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34 C.F.R. §303.446(a))

주 민원 절차는 OSSE의 주 민원 사무실(State Complaint Office)에서 관리합니다. 귀하가 DC EIP 또는 귀 자녀의 제공자 중 하나에 대해 정식 주 민원을 제기할 경우, OSSE는 역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 독립적인 조사를 완료하고,
- 민원인에게 민원 대상 혐의에 대해 구두로든 서면으로든 추가 정보를 제출할 기회를 허용하고,
- DC EIP 또는 해당 서비스 제공자에게 민원에 대응할 기회를 제공하고,
- 모든 관련 정보를 검토한 후 DC EIP 또는 해당 서비스 제공자가 장애를 가진 개인 교육법 파트 C의 요건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독립적인 판정을 내리고,
- 귀하에게 민원의 각 혐의에 대한 서면 결정서를 발급하고 여기에 아래 사항을 포함합니다.

  (i) 알아낸 사실 및 결론

  (ii) 최종 결정의 사유

(34 C.F.R. § 303.433(a)) 위에 명시된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통해 부동의를 해결하는 동안, 귀 자녀는 귀하와 해당 서비스 제공자가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조기 개입 서비스를 계속 받게 됩니다. (34 C.F.R. § 303.430(e))

연락처:

현지 프로그램 디렉터

Jasmyn Price
강력한 시작 DC 조기 교육 조기 개입 프로그램 (DC EIP)

3230 Pennsylvania Ave. SE, Suite 201
Washington, DC 20020
전화: (202) 270-4482

이메일: Jasmyn.Price@dc.gov

주 파트 C 디렉터
Andres Alvarado

주 교육감 사무실

1050 First St. NE, Sixth Floor
Washington, DC 20002
전화: (202) 727-5853
이메일: Andres.Alvarado@dc.gov

중재를 요청하거나 중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을 경우, 연락처:

주 교육감 사무실 분쟁 해결 사무실(Office of Dispute Resolution)

1050 First Street, NE, Fourth
Floor Washington, DC 20002
전화: (202) 698-3819

이메일: hearing.office@dc.gov

웹 사이트:

https://osse.dc.gov/service/special-education-mediation

적법절차로서의 심리를 요청허거나 적법절차로서의 심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을 경우, 연락처:

주 교육감 사무실 분쟁 해결 사무실(Office of Dispute Resolution)

1050 First Street, NE, Fourth Floor Washington, DC 20002
전화: (202) 698-3819

이메일: hearing.office@dc.gov

웹 사이트:

https://osse.dc.gov/service/request-due-process-hearing

정식 주 민원을 제기하거나 주 민원에 대해 자세히 싶을 경우, 연락처:

주 교육감 사무실

주 민원 사무실 시스템 및 지원 분과(Division of Systems and Supports), K-12

1050 First Street, NE, Fifth Floor Washington, DC 20002
전화: (202) 727-6436

이메일: osse.IDEAstatecomplaints@dc.gov

웹 사이트:

https://osse.dc.gov/service/specialized-education-state-complaints

당국의 사명

강력한 시작 DC 조기 개입 프로그램의 사명은 출생 시부터 2세까지 발달장애 및 장애가 있는 영, 유아 및 그 가족들 파악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당국은 문화를 존중하고 가족의 필요에 부합하는 배려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WE ARE WASHINGTON DC
GOVERNMENT OF THE DISTRICT OF COLUMBIA
MURIEL BOWSER, MAYOR

개정: 2023년 5월